

[종군위안부]피해자에게 잠정조치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 (골자)

첫째, 잠정조치금의 지급

1. 정부는 인도적 정신에 입각하여 전 [종군위안부]에 대해 잠정조치금을 지급한다.
2. 잠정조치금의 액수는 전 [종군위안부]개개인에게 4백만엔으로 하고 기명 國債 로 교부한다.

둘째, 지급을 위한 裁定

1. 잠정조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재정은, 이것을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내각총리대신이 행한다.
2. 1의 재정의 권한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본 적십자사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同社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지급방법

1. 잠정조치금은 수급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사정 당국의 동의를 얻어 지급하기로 한다.
2. 둘째의 2의 경우에는 일본적십자사가 수급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인도적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통해서 지급하기로 한다.

[종군위안부]피해자에게 잠정조치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 (주)

주 1 : 유엔 NGO인 국제법률가위원회(ICJ)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의 국가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문제가 사법적으로 결착되기 전이라도 일본정부는 피해자의 조기 구제를 위해서 잠정적인 지불을 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일본정부는 순수한 잠정적 조치로서, 그 권리 및 주장을 손상하지 않은채로 피해자의 리하비리테이션을 위해 4만불을 지불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동위원회 권고 제4항). 이 권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국회가 (이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임의로,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인에게 4백만엔의 잠정조치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위원 입법을 한다.

주 2 :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임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일본 재판소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이 법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최종결착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과 헌법이 정하고 있는 3권분립 제도하에서, 국가가 법적 책임에 과한여 지금 즉시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령이고 국가로서 피해자들의 심정과 일본군에 의한 명예와 존엄에 대한 가해의 사실을 알면서, 사법적 최종판단의 결과를 볼 때까지, 국가로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도적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용납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적 정신」은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잠정조치금 지급을 위한 법률이 성립해도, 법적 책임문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도 국회의원도 앞으로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의 법적 책임문제를 계속적으로 해명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주 3 : 국민기금은 민간기금이기 때문에 그 지불(위로금 2백만엔 및 위로복지사업 3백만엔 규모)은, 민간에 의한 지불이며 국가에 의한 지불이 아니다. 국가에 의한 잠정조치금 4백만엔은 국민기금에 의한 지불과는 전혀 별도로 국가에 의해 지불되는 점에 의미가 있다.